

COVID-19

로스앤젤레스 공중보건국 직장의 COVID-19 대응

최신 업데이트:

2021년 1월 13일: COVID-19 노출 또는 여행 후 10일간의 격리 및 11일 차부터 14일 차까지 증상을 자가 점검하기를 요구하는 신규 정책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필수 근로자들은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므로 COVID-19에 걸려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COVID-19 확진자 확인되거나 COVID-19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란 COVID-19 바이러스 검사(면봉으로 검체 채취 또는 타액)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사로부터 COVID-19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중에 확진자가 보고될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확진자(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 자가 고립하도록 하고, 확진자 또는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계획의 일환으로 직장의 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다른 직원 또는 방문자에게 미칠 위험 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격리된 모든 직원에게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보호

직장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다음 기본적인 예방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신체적 거리두기 (모든 직원, 고객, 방문객들은 대화하는 중에도 서로 6피트 이상 거리두기)
- 모든 직원, 고객, 방문객들이 **안면 가리개**를 필수로 착용하기
- 자주 손 씻기를 권장 (이는 화장실에 충분한 비누, 화장지 및 다른 물품이 갖춰져 있어야 함을 의미) 및 직원들에게 손을 씻기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 자주 만지는 표면의 정기 청소 및 소독하기
- HVAC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장소에는 환기 증가시키기(자세한 정보는 [환기](#)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직원들이 해고나 업무 시간 단축에 관한 걱정 없이, 아프면 집에서 쉬고, 가족이 아프면 돌볼 수 있도록, 병가 정책 수립하기. 직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들이 직장에 입장하기 전에 증상 점검하기.

직장에 확진자나 접촉자가 있는 경우

직원이 아프거나 확진자(위에 정의)와 접촉했으면, 해당 직원을 바로 집으로 보내고, 감염되었으면 자가 고립을 노출되었으면 격리하도록 합니다. 상관은 누군가가 아프거나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 즉시 확진자와 노출된 사람을 다른 직원들과 분리해 지정된 공간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즉, 필요한 경우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 해당 직원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만약 그 사람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많이 아프다면,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보호 장비(장갑, 가운)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직장에 COVID-19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AC DPH의 [사업체 영업 재개 점검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직장에서 COVID-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직원 중 확진자가 확인되면, 고용주는 확진자가 전염성이 있는 기간에 확진자에게 노출된 모든 밀접 접촉자(시설에서 시간을 같이 보낸 직원 및 비직원)를 식별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 확진자가 전염성이 있는 기간은 첫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더 이상 고립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입니다("COVID-19 확진자를 위한 [자택 고립 지침](#)"의 설명을 따름).
- COVID-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받기 2일 전부터 검사를 받은 후 10일까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가 전염성이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이 직장 내에서 확진자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OVID-19

로스앤젤레스 공중보건국 직장의 COVID-19 대응

- 확진자와 24시간 동안 6피트 이내에서 총 15분 이상 같이 있음, 또는
- 확진자의 체액 및/또는 분비물에 접촉한 경우, 예를 들어 기침 또는 재채기를 맞은 경우 또는 음료나 음식 식기를 공유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11일 차부터 14일 차까지 본인의 건강을 감시하고 표준 COVID-19 예방 조치를 각별히 조심하면 10일 차 이후에 격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모든 밀접 접촉자는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이 고립 또는 격리해야 하면 유급 병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LA 카운티로 온 모든 직원은 카운티로 돌아오는 주민이든 새로 도착하는 간에 10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행 후 직장에 출근한 직원에게는 집에 돌아가서 위에 설명된 격리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COVID-19 증상 발현 여부 또는 아픈 사람에게 노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행 격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 담당관의 여행 명령](#) 및 자주 보는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표적 검사

표적 검사는 직장에서 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된 후 확산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일했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을 시험함으로써, 고용주는 직장에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적 검사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면 새로운 확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여, 확산된 지역에 더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검사 지원

- 보험이 있는 직원은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보험이 없거나 담당 의사가 검사를 제공할 수 없는 직원은, covid19.lacounty.gov/testing에 방문하거나 2-1-1에 전화해 무료 검사 장소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용주에게 검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직원 보건부에서 검사를 제공하거나 사립 검사 업체를 회사에 불러와 검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최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새로운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식별, 격리 및 진단 검사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적 검사의 역할

표적 검사의 효용과 한계를 인지하고 그것이 사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 검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믿는 직원 중 무증상 COVID-19 감염자를 식별합니다.

표적 검사가 적용 되지 않는 부분: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찾고 접촉자들이 격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확진자로 인해 누가 감염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사는 한 시점에 대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며칠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접촉 후 5일 또는 6일째 되는 날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밀접 접촉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완전히 격리해야 하고, 추가로 4일 동안 예방 조치(마스크 착용, 신체적 거리두기 및 손 씻기)를 준수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실험실 검사로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명 이상의 사례가 확인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집단발병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1-888-397-3993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복귀

발열이 있거나 COVID-19이 의심되는 다른 증상이 있어 집으로 돌아간 아픈 직원은 COVID-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COVID-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열이 없고 증상이 개선되면 24시간 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증상 시작일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그리고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열이 없고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집에서 고립해야 합니다. 10일 차에도 여전히 아프면,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열이 없고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확진자들은 고립 기간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외출한 동안 아무런 증상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1/13/21 Case Management for Workplace (Korean)



COVID-19

로스앤젤레스 공중보건국 직장의 COVID-19 대응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기간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요구 고립 또는 격리 기간을 완료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공중 보건국의 서한이나 COVID-19 음성 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병 대응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LAC DPH는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집단발병은 직장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3건 이상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집단발병 대응책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 지원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합니다. 집단발병을 조사하고 직장 대응 지도를 도와주는 공중 보건국의 사례관리자를 배정할 것입니다.

요약

COVID-19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장의 모든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확산 방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안면 가리개 착용하는지, 직원들이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의 인원을 제한하고, 청소 및 손 위생 실천을 따라야 합니다. 집단발병이 나타나면 관리를 위해 LAC DPH에 연락하십시오. 직장 내의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에게 표적 검사를 하는 것은 작업장에 추가 노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주에게 권장하는 감염 관리 도구입니다.

추가 정보:

- 관리자를 위한 COVID-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business/FAQ-Managers.pdf>
- COVID-19 밀접 접촉자를 위한 자택 격리 지침 ph.lacounty.gov/covidquarantine
- COVID-19 감염자를 위한 자택 고립 지침 ph.lacounty.gov/covidisolation

COVID-19 관련 추가 자료는 LAC DPH의 COVID-19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